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67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조지연 · 김은혜 · 박준태
김승수 · 김성원 · 이달희
김상훈 · 김소희 · 서일준
임이자 · 정동만 · 박형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풍수해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해 피해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 시설에 관한 개념과 지원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대응 정

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항, 제33조의3, 제70조 등).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제3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로 하고, 제2장제6절에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 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폭염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5(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제70조 중 “등의”를 “및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u>폭염피해 저감시설</u> ”이란 <u>폭염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u>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 다. (생략) <u><신설></u> 라. (생략) 7. ~ 9. (생략) ③ ~ ⑥ (생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u> 마. (현행 라목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u>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33조의5(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폭염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u>
<u>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생략)</u>	<u>제33조의6(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현행 제33조의4와 같음)</u>
<u>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생략)</u>	<u>제33조의7(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현행 제33조의5와 같음)</u>
<u>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u>	<u>제70조(국고보조 등) -----</u> -----

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u>및 폭염피해</u> <u>저감시설 사업 등의</u>----- ----- ----- ----- ----- ----- ----- -----.
--	---